



# 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namwon.go.kr](http://www.namwon.go.kr)

제18호 2019. 5. 17(금)

|    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|
| 선<br>람 | 기관의 장 |
|        |       |

## 고시

- 남원시 고시 제2019-59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----- 1

## 공고

- 남원시 공고 제2019-940호 천사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공고 ----- 2
- 남원시 공고 제2019-960호 양선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공고 ----- 4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4

남원시 고시 제2019-59호

###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,  
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05월 17일

남 원 시 장

- 1. 사 업 명 : 개간사업
- 2.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
- 3. 사 업 비 : 자력사업
- 4. 사업내용
  - 가. 위 치 :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산17-7, 산17-2
  - 나. 사 업 량 : 10,969m<sup>2</sup>
  - 다. 사업기간 : 2019. 05. 30. ~ 2020. 04. 30.
  - 라. 사업시행자 : 장수군 번암면 신\*\* \*\*\*, 김\*\*
-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(620-638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19 - 940호

## 천사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공고

남원시에서 시행하는 『천사소하천 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및 제21조, 같은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05. 22.

남 원 시 장

### 1. 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의 종류 : 소하천 정비
- 나. 사업의 명칭 : 천사소하천 정비사업
- 다. 위        치 : 남원시 월락동 622-6 ~ 575 일원
- 라. 사업의 규모 : 하천정비 L=0.6km
- 마. 사 업 기 간 : 2019.04. ~ 2019.12.31
- 바. 사업시행자 :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

### 2. 보상계획 및 열람

- 가. 보상대상: 남원시 월락동 622-6 ~ 575 일원에 소재한 토지 및 지장물건과 권리 관계 등 일체
- 나. 토지 및 물건조서: 열람장소에 비치하며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
- 다. 열람기간: 2019. 05. 22. ~ 2019. 06. 05. (15일간)
- 라. 열람장소: 남원시청 3층 건설과 하천계(☎063-620-6545,6547)
- 마. 이의신청: 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4. 보상시기

- 가.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, 보상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의 구체

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.

나. 보상시기 :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

### 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방법·절차 : 현금보상이며,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

나. 보상가격의 결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(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·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)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.

다.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,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# 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▶

추천감정평가 업자명 :

| 토지 소재지 | 당초 지번 | 편입면적 (㎡) | 토지 소유자 |    | 소유자 확인 | 전화번호 (자택 또는 휴대폰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| 주소     | 성명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

※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### 6. 기타사항

가.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
나.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라.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설과 하천계(☎063-620-6545,6547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19 - 960호

## 양선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공고

남원시에서 시행하는 『양선소하천 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및 제21조, 같은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05. 22.

남 원 시 장

### 1. 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의 종류 : 소하천 정비
- 나. 사업의 명칭 : 양선소하천 정비사업
- 다. 위            치 :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824 ~ 337 일원
- 라. 사업의 규모 : 하천정비 L=1.0km
- 마. 사 업 기 간 : 2019.06. ~ 2020.12.31
- 바. 사업시행자 :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

### 2. 보상계획 및 열람

- 가. 보상대상: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824 ~ 337 일원에 소재한 토지 및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
- 나. 토지 및 물건조서: 열람장소에 비치하며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
- 다. 열람기간: 2019. 05. 22. ~ 2019. 06. 05. (15일간)
- 라. 열람장소: 남원시청 3층 건설과 하천계(☎063-620-6545,6547)
- 마. 이의신청: 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4. 보상시기

- 가.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, 보상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의 구체

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.

나. 보상시기 :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

### 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방법·절차 : 현금보상이며,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

나. 보상가격의 결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(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·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)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.

다.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,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# 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▶

추천감정평가 업자명 :

| 토지 소재지 | 당초 지번 | 편입면적 (㎡) | 토지 소유자 |    | 소유자 확인 | 전화번호 (주택 또는 휴대폰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| 주소     | 성명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

※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### 6. 기타사항

가.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
나.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라.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설과 하천계(☎063-620-6545,6547)으로 문의 바랍니다.